

자양전통시장 고객쉼터 관리위탁 계약서(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자양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자양전통시장 고객쉼터 위탁관리 계약(사용·수익허가)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건립된 위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위탁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광진구” 라 한다)이고 수탁자는 자양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하 “자양시장” 이라 한다)이다.

제3조(재산의 표시) ① 명 칭 : 자양전통시장 고객쉼터

②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섬로47길 45-2 (자양동)

③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④ 연면적 : 265.59㎡

제4조(관리위탁 기간) ① 관리위탁 기간은 2016년 6월 23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약 2년 6개월간)로 한다.

② “광진구”와 “자양시장”은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관리 위탁 기간 연장 등이 필요할 경우 “광진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자양시장”의 관리 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기간을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사용료 및 위탁관리 대상) ① 위탁시설의 관리·위탁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② “광진구”가 “자양시장”에게 유지·관리 위탁하는 시설은 아래와 같다.

| 층 별 | 면적(㎡) | 주 용 도 | 세 부 시 설 |
|-----|--------|------------------------|--|
| 1 층 | 96.95 | 고객쉼터, 배송센터, 물품보관소, 화장실 | - 시장고객 휴식공간 - 시장고객 배송서비스 지원 - 물품보관소 |
| 2 층 | 104.40 | 작은도서관, 사무실, 화장실 | - 작은 도서관 - 상인회 사무실, 시장관리 및 안내 |
| 3 층 | 64.24 | 다목적실 | - 상인교육 - 상인회 총회 등 각종 회의 - 시장내방고객 및 인근주민대상 교육 - 시장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공간 |
| 계 | 265.59 | | |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자양시장”은 위탁시설을 전통시장 경영현대와 촉진 등 시장 활성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용하여야 하며, 입점 상인과 시장 이용 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자양시장”은 건물 관리자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자양시장”은 위탁시설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광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광진구”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목적의 변경
2. 관리 위탁의 목적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반하는 위탁 시설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위탁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수탁 재산에 설치한 “협동조합”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5. “광진구”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는 행위

④ “자양시장”은 위탁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자양시장”은 제3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광진구”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자양시장”은 위탁시설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 까지 “광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광진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탁시설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자양시장”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 결과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자양시장”은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광진구”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 관리 비용 부담) ① “자양시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광진구”에게 보고해야한다.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광진구”가 부담하여 수리하고, 그 이외 시설 유지 관리 비용은 “자양시장”이 부담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광진구”와 “자양시장”이 협의 하여 “광진구”가 결정한다.

제9조(“자양시장”의 준수사항) 위탁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자양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및 고객쉼터 등을 시장고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간까지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상 문제점이 노출될 경우 “광진구”의 승인 하에 그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
2. 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위탁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위탁시설에 대한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 “광진구”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민·형사상 책임 등) ① “자양시장”은 건물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자양시장”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양시장”은 건물을 수탁 운영하면서 “자양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광진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자양시장”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목적과 기능이 상실되어 위탁시설을 반환 할 때는 “자양시장”은 “광진구”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원상으로 회복하여 “광진구”의 소속 직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시설의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광진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재계약 체결) 계약체결 이후 위탁 시설의 관리상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광진구”와 “자양시장”은 쌍방 합의하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은 “광진구”와 “자양시장”이 각각 서명 날인 하는 날로부터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②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의무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광진구”와 “자양시장”이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4조(기 타)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

② 이 계약서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진구”와 “자양시장”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2016년 6월 일

위탁자(광진구청)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수탁자(협동조합) : 자양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인)